

건축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심의일자	2023. 11. 1. ~ 11. 8.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(건축물 해체허가 적정성 검토)		
건축주	류**		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		
	지번 : 933번지	관련지번 :	
	대지면적 : 3,340㎡	용도지역 : 준공업지역, 지원시설구역 등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1,426.76㎡	건폐율 : 42.71%	층수 지하 : / 지상 : 1층
	주용도 : 공장	구조 : 일반철골구조	세대수(호)/동수 : 가구 / 1동
	최고높이 : 11m	용적률 : 42.71%	연면적 : 1,426.76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행자도로가 인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.1.1 해체공법 선정 개요도 상 '무' 로 작성됨 ○ 해체장비의 해체가능높이는 구조물높이(10.6m)+3.0m를 확보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비 해체가능 높이 11.4m ○ 가설울타리+방진망(6.0m)로 검토되어 있으나, 가설구조물은 구조물 높이 이상을 확보할 것 ○ 가설구조물 검토시 풍하중은 현행 구조기준을 적용할 것 ○ 해체 공사시 인접한 구조물(신고대상 건)의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 ○ 비계설치 및 내·외부마감재 등 건물철거와 관련된 해체작업은 해체 감리자의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석면철거시 해체된 자재의 모든 해체작업은 감리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공정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○ 해체계획서 상 이격거리가 불명확하고 버스정류장과의 이격거리 등 민감한 거리산정은 규정에 맞게 표기하시고 근거 명기가 필요해보임 ○ 내장재 인력 철거시 고소작업 등에 대한 장비난 철거재 이동과 폐기물 적재소까지 반출 등에 대한 계획서 검토 필요해 보임 ○ 비계인 경우 건물높이 이상 설치하여 낙하물 등의 비산을 차단하는 바강관 울타리를 당 해체건물 높이 미만(6m)으로 설치하는 계획의 목적과 당위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○ 해체작업시 중간보 st3 철거후 트러스 mt1 한부분 컷팅시 트러스의 전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○ 외벽하부 조적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축물 철거시 전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○ 기초철거 및 살수 등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해 보임 ○ 공사 시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유도원 및 교통안내원 배치, 	

		<p>보행자 안전통로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</p> <p>○ 해체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재검토</p> <p>- 지상구조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상 구조물(철골조)의 경우 공정 4일에 대해서 표준일위대가 등을 참고 또는 근거 공정표를 재작성 제출 할 것(철골조 1톤 철거시 0.21시간이 소요되나 개방성 작업에 대한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에 대한 산출 근거를 첨부 바람. (첨부 일위대가참조) <p>- 기초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재의 해체계획서는 기초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향후 사용계획 등 또한 없으므로 폐기물 재활용 또는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· 계획서에서 환경영향 등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공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봄(콘크리트조 1m³ 철거시 0.2시간이 소요되나 개방성 작업성 등을 고려 일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게 할 것(첨부 일위대가 참조)
--	--	--

<p>심의결과</p>	<p>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-------------	--